

# 맥스드림 김종석행정법 테마특강 4

http://cafe.daum.net/sorento2001

## <집행정지>

### 1. 다음 중 가구체에 해당하는 것은?

(5급 승진 기출)

- ① 즉시강제                      ② 간접강제                      ③ 행정심판
- ④ 직접강제                      ⑤ 집행정지·가처분

### 2. 취소소송제기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서울시 7급 기출)

-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에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다.
- ② 이것은 남소를 방지하고 행정목적에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 ③ 이것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 ④ 국민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적인 집행정지제도를 둔다.
- ⑤ 집행정지제도가 있는 한 가처분제도는 행정소송에 적용되지 않는다.

### 3. 행정소송법상 가구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고시 기출)

- ① 현행 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 ② 집행정지의 요건과 관련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금전보상이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손해를 의미한다.
- ③ 행정행위의 부관만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될 수 없다.
- ④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 집행정지가 허용된다.
-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 4. 집행정지제도가 적용되는 소송의 형태는?

(김남진외 공저, 객관식행정법, 665면, 문 84)

- ① 취소소송에만 인정된다.
- ②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인정된다.
- ③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에 인정된다.
- ④ 항고소송 일반에 인정된다.
- ⑤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모두에 인정된다.

### 5.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대전 7급 기출)

- ①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 ② 통설·판례에 의하면 거부처분도 집행정지의 대상이 된다.
- ③ 집행정지결정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

- ④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6.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3년 행정고시)

- ① 처분의 집행정지나 절차의 속행정지를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집행정지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③ 집행정지결정은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만 잠정적인 효력을 가진다.
-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⑤ 집행정지결정에는 장래에 대한 효력뿐만 아니라 소급효도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7. 취소소송에서의 집행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04년 국회 8급)

- ① 집행정지의 대상은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절차의 속행으로 이 경우 처분은 본안의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 ② 집행정지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서와 같이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③ 불허가처분·거부처분 등과 같은 소극적 처분에 대하여는 집행정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 ④ 집행정지결정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 ⑤ 판례는 집행정지의 요건과 관련하여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집행정지를 명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8. 다음 중 집행정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5년 서울시 9급)

- ①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및 절차의 속행이다.
- ② 불허가처분·거부처분 등과 같은 소극적 처분에 대하여는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이다.
- ③ 사실행위도 공권력의 행사이면서 사인에게 법률상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한, 집행정지의 대상이 된다.
- ④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인이 입게 될 손해보다도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 때가 포함된다.
- ⑤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9. 행정소송법상 가구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5년 부산시 9급)

- ① 현행 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 ② 행정행위의 부관만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허용된다.
- ③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현행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경우에만 집행정지가 허용된다.



7. 사정판결이 인정되는 것은?

(05년 전남 9급)

- ① 취소소송
- ② 당사자 소송
- ③ 무효등확인
- ④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

\* 사정판결과 사정재결과의 비교

① 적용범위

<사정판결>

		집행정지	사정판결
항고소송	취소소송	○	○
	무효등확인소송	○	X
	부작위위법확인소송	X	X
당사자소송		X	X

<사정재결>

		집행정지	사정재결
항고심판	취소심판	○	○
	무효등확인심판	○	X
	의무이행심판	X	○

② 권익구제방법

<b>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b>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u>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u> 그 밖에 <u>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u> 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b>행정심판법 제33조 제2항</b>	재결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사정재결)을 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u>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u> , 피청구인에게 <u>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u> 을 명할 수 있다.
<b>00년 행자부7급 기출지문</b>	행정심판법은 사정재결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권익구제방법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



(01년 입법고시)

- ①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형성력은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에 한하며, 기각판결에는 인용되지 아니한다.
- ③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있으면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 ④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상 법률관계는 행정청의 별도의 절차없이 당연히 형성의 효과를 발생한다.
- ⑤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뿐만 아니라 그 밖의 관계행정청도 기속한다.

5. 다음 중 기속력이 인정되는 판결이 아닌 것은?

(김동희, 객관식행정법, 805면, 문89)

- ① 취소판결
- ② 부작위위법확인판결
- ③ 무효확인판결
- ④ 청구기각판결
- ⑤ 당사자소송판결

6. 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무효이다.

(김남진·이일세 공저, 객관식행정법, 674면, 문109) - ( )

7.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03년 판제사)

- ①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있으면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 ②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 ③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뿐만 아니라 그 밖의 관계행정청도 기속한다.
- ④ 형성력은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에 한하며, 기각판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의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 형성의 효과가 발생한다.

8. 취소소송의 판결의 주문에는 다투어진 행정행위의 취소 여부가 기재될뿐이므로, 당해 행정행위의 적법·위법에 관해서는 주문에서 판단되는 것은 전혀 없다.

(96년 입법고시) - ( )

<무효등확인소송>

1.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04년 행정고시>

- ① 민사상 청구에 있어서 선결문제로서 무효의 판단이 가능하다.
- ② 행정소송의 종류 선택에 있어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 ③ 사정재결 및 사정판결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가능하다.

- ④ 당연무효인 징계처분은 상대방이 이를 용인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 ⑤ 행정쟁송의 제기요건 중 제소기간은 무효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 행정행위는 그 흠의 정도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와 ‘무효인 행정행위’로 구분하는 바, 양자의 구별실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3년 행정고시>

- 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취소쟁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하여야 하지만, 무효인 행정행위는 민사소송에서 그 선결문제로서 무효를 확인받을 수 있다.
- ② 다수설과 판례에 의하면, 행정소송법상의 사정판결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제기기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 ④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와는 달리,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집행정지원칙이 적용된다.
- ⑤ 흠의 승계와 관련하여, 선행행위의 흠이 무효사유인 경우 그 흠은 항상 후행행위에 승계되지만, 취소상유인 때에는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하나의 행정목적 실현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그 흠이 승계된다고 본다.

3.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99년 행자부 7급>

- ① 행정행위의 흠이 중대하거나 명백하면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 ② 선행행위에 무효사유인 흠이 있으면 그 흠은 후행행위에 승계된다.
- ③ 무효인 행정행위도 쟁송제기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제소할 수 없다.
- ④ 무효인 행정행위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무효가 확인될 때까지는 효력이 인정된다.

4. 다음 중 행정소송법상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취소소송의 규정은?

<강구철, 객관식행정법강의, 810면 문2>

- ① 재판관할
- ②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 ③ 사정판결
- ④ 원처분주의
- ⑤ 직권심리주의

5.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판 1984. 2. 28, 82누154) - ( )

<소의 변경,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 소의 변경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김동희, 객관식행정법, 796면 문64)

- ① 소의 변경에는 소의 종류의 변경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 있다.
- ② 처분의 변경에 따른 소의 변경시는 원고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처분의 변경에 의한 소의 변경시는 신소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 ④ 소의 변경은 법원의 판결로 하여야 한다.
- ⑤ 소의 변경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새로운 소는 구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2.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03년 판세사)

- ① 소의 변경이란 원고가 소송대상인 청구의 일부나 전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② 행정소송법은 ‘소의 종류의 변경’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두 가지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 ③ 피고의 변경을 수반하는 소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소의 종류의 변경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야 한다.
- ⑤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종전의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3. 소의 변경으로 인하여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법원은 허가결정을 함에 있어 새로이 피고를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4.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이 있으면 舊訴는 취하된 것으로 보고, 新訴는 구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 )

5. 행정심판청구의 변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02년 입법고시)

- ① 청구의 변경은 청구인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 ② 청구의 기초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청구의 변경이 가능하다.
- ③ 심판의 종류의 변경도 가능하다.
- ④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청구의 변경도 가능하다.
- ⑤ 재결 전이라면 언제든지 청구를 변경할 수 있다.

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3년 행정고시)

- 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확인소송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 ③ 관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 판결(확인판결)이 확정되

- 면 행정청은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
- ④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제3자의 소송참가와 재심청구가 인정된다.
  -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기술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01년 관세사)

- ①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판결시이다.
- ②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③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 ④ 간접강제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 ⑤ 사정판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8.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김남진·이일세 공저, 전계서, 680면 문123)

- ①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 ② 이는 행정청의 무응답이라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③ 행정소송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하여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것은 입법과오라는 견해가 있다.
-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인용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상대방이 신청한 내용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⑤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05년 국회 8급)

- ①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이다.
- ②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③ 인용판결이 있을 경우, 행정청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적극적 처분만을 할 수 있다.
- ④ 개별 법률에서 예외적 행정심판천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을 거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사실 및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의 입증책임은 원고가 지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의 입증책임은 피고인 행정청이 진다.

**10.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 ① 주택개발제한지역개발조합의 조합원지위확인소송
- ②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과오납금환급청구소송
- ③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격 안정지원금 청구소송
- ④ 서울시립무용단원해촉의 무효확인소송

<정답> ②

**<판례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본 사례>**

**(1) 공법상의 신분·지위 등의 확인소송**

- ① 공무원(국·공립학교 학생, 국가유공자)의 지위확인소송
- ② 농지개발조합직원의 지위확인소송
- ③ 재개발조합을 상대로한 조합원의 조합원지위확인소송(그러나 관리처분계획 또는 그 내용인 분양거부처분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에 의한다.)
- ④ 연금수혜대상자 확인소송
- ⑤ 훈장종류 확인소송

**(2)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 ① 지방전문직공무원(서울대공전술연구소 연구원) 채용계약의 의사표시
- ②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과 해촉
- ③ 광주광역시립합창단원 재위촉거부
- ④ 공중보건의사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의 해지

**(3)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소송**

- ①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격 안정지원금 청구소송(석탄산업지원금 청구소송)
- ②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지급의 청구(폐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 청구)
- ③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상 보상금 지급의 청구
- ④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부조금청구소송

“교육부장관(당시 문교부장관)의 권한을 제위임 받은 공립교육기관의 장에 의하여 공립유치원의 임용기간을 정한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고 사실상 유치원 교사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유치원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신분보장을 받는 정월 외의 임시직 공무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에 대한 해임처분의 시정 및 수령지체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대판 1991.5.10, 90다10766)

“법령의 개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퇴역연금액 감액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퇴역연금수급권자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감액조치의 효력을 다툴 것이 아니라 직접 국가를 상대로 정당한 퇴역연금액과 결정, 통지된 퇴역연금액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대판 2003.9.5, 2002두3522)

**3. 다음 중 판례상 당사자소송이 아닌 것은?**

<06년 국회사무처 8급>

- ①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 ② 공무원 연금법령개정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금액의 지급이 정지되어서 미지급된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 ③ 진료기관의 의료보호비용 청구에 대한 지급거부를 다투는 소송
- ④ 광주민주화운동관련보상금지급과 관련한 소송
- ⑤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확인을 구하는 소송

4. 다음 중 우리 판례상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 해지통보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 ②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 ③ 광주민주화운동의 유족이 제기하는 보상청구소송
- ④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다투는 소송
- ⑤ 법령의 개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퇴역연금액 감액조치에 대해 다투는 소송

5. 다음 중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예는?

(김동희, 전제서, 852면 문189)

- ① 공법상의 금진지급청구소송
- ② 공법상의 계약에 관한 소송
- ③ 피수용자를 피고로 하는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감액청구소송
- ④ 공법상 신분확인에 관한 소송
- ⑤ 공법상 사무관리에 관한 소송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개별법상의 근거규정>**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디자인보호법
- \* 의장법
- \* 전기통신법
- \* 특허법
- \* 실용신안법

6.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05년 국가직 7급)

- ①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송
- ②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소송
- ③ 각종사회보험 급부청구소송
- ④ 공법상신분 확인에 관한소송

7. 서울특별시에 토지를 수용당한 甲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중 보상금 액에 불복하여 보상금의 증액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가?

(03년 판세사)

- ①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를 피고로 한다.
- ② 재결청인 중앙토지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 ③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 또는 재결청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 ④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와 재결청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 ⑤ 재결청인 중앙 토지수용위원회 단 甲의 동의가 있으면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도 피고로 한다.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인 A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 누구를 피고로 하여야 하는가?(사업시행자는 B광역시로 전제한다.)

(06년 대구시 9급)

- ① B광역시와 토지수용위원회
- ② B광역시
- ③ B광역시장과 토지수용위원회
- ④ B광역시장

9. 다음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당사자소송에 준용되는 것은?

(류지태, 전제서, 705면 문15)

- ① 취소소송에 관한 선결문제
- ② 행정심판전치주의
- ③ 집행정지
- ④ 사정판결
- ⑤ 판결의 기속력

10. 행정소송법에 있어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02년 관세사)

- ①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 ②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 ③ 직권심리주의
- ④ 피고경정
- ⑤ 원고적격

11. 당사자소송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강구철, 객관식행정법강의, 816면 문13)

- ① 법령에서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 ③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에 대해서도 동법 제25조의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 ④ 당사자소송의 판결에는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판결의 기속력과 제3자효가 인정된다.
- ⑤ 행정소송법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2. 당사자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김동희, 전제서, 850면 문185)

- ① 공공단체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 ②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③ 당사자소송은 국가, 공공단체, 그 외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 ④ 당사자소송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예에 의한다.
- ⑤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13. 다음은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류지태, 전제서, 705면 문14)

- ①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예로는 특허법상의 규정을 들 수 있다.
- ②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의 제한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③ 소송물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나 권리관계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주장이다.
- ④ 행정소송법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⑤ 종전의 토지수용법하에서의 판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행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불복으로 제기하는 손실보상금의 증감청구소송을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라고 본다.

<가집행선고>

- \*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행정소송법 제43조).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단서(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하여는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없다)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해석.
- \* 현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단서를 위헌결정(헌재결 1989. 1. 25, 88헌가7)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중 단서 부분은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소송당사자를 차별하여 국가를 우대하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 \* 대법원도 2000년에 이를 확인(대판 2000. 11. 28, 99두3416)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준용되므로 법원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 \* 이제는 국가가 민사상 당사자인 경우에는 가집행선고가 가능하다(홍정선, 행정법특강 제5판, 741면)

<행정심판>

1.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가 아닌 것은?

<06년 군무원>

- ① 취소심판
- ② 무효등확인심판
- ③ 의무이행심판
- ④ 부작위위법확인심판

2. (1) 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도 가능하며 구두로도 가능하다.

(부산시 7급 기출) - ( )

(2)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00년 행정고시) - ( )

3. 현행 행정심판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경찰 9급 기출, 06년 광주 9급)

- ① 행정심판청구는 반드시 처분청을 경유하여 재결청에 해야 한다.
- ②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 ③ 도지사의 모든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기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이다.
- ④ 행정심판의 심리는 서면심리와 구술심리 모두 가능하다.

4.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0년 행정고시, 05년 서울시 9급)

- ①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90일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 ③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알린 경우에는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법정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본다
- ④ 무효등확인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청구기간에 관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⑤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5.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90일이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

6. 다음 행정심판의 설명 중 틀린 것은?

(05년 경기교행)

- ① 대통령의 처분은 특별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 ② 미복원
- ③ 부작위,거부처분은 의무이행심판의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 ④ 미복원

7.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04년 행자부 7급)

- ① 서울시 종로구청장이 행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은 서울시장이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행정자치부장관이다.
- ③ 경기도 지방경찰청소속 경찰관이 직무상 행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경기도이다.
- ④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8. 행정심판의 재결청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04년 서울시 9급)

- ①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 ② 국무총리·행정각부장관 및 대통령 직속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청 자체가 재결청이 된다.
- ③ 국세 및 관세심판에 대해서는 국세심판원이 재결청이 된다.
- ④ 서울특별시·광역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재결청이 된다.
- 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기타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재결청이 된다.

**9. 행정처분의 재결청으로 옳은 것은?**

(04년 대구시 9급)

- ① 행정심판법은 제3의 기관이 재결청이 된다는 규정이 있다.
-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건축에 관한 처분의 재결청은 서울특별시이다.
- ③ 경남도지사의 식품위생사무에 관한 처분의 재결청은 행정자치부장관이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에 관한 재결청은 국무총리이다.

**10. 서울특별시장이 행한 식품위생업무에 관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서울시 7급 기출)

- ① 국무총리
- ② 보건복지부장관
- ③ 행정자치부장관
- ④ 서울특별시
- ⑤ 대통령

**11. 다음 중 처분행정청 자신이 재결청이 되는 예에 속하지 않는 것은?**

(김남진·이일세 공저, 전계서, 573면 문 27)

- ① 국무총리
- ② 감사원장
- ③ 국회사무총장
- ④ 기획예산처장관
- ⑤ 법원행정처장

**12. 재정경제부장관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청과 행정심판위원회는?**

(04년 입법고시)

- ① 법체처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② 국무총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③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소속 행정심판위원회
- ④ 재정경제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소속 행정심판위원회

⑤ 재정경제부장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13. 다음 중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공통점이라 할 수 없는 것은?

(05년 관세사)

- ① 실질적 쟁송이다.
- ②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 ③ 대심구조를 취하고 있다.
- ④ 원칙적으로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⑤ 의무이행심판과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된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이동(異同)>**

**(1) 공통점**

- ① 행정상 법률적 분쟁을 전제로 하는 실질적 쟁송이다.
- ② 양자는 당사자의 발의(쟁송의 제기)에 의해서만 개시된다.
- ③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 선다(대심구조).
- ④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⑤ 쟁송사항에 관한 개관주의를 취한다.
- ⑥ 직권심리가 인정되고 있다.
- ⑦ 처분의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채택되고 있다.
- ⑧ 불고불리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⑨ 소송참가제도가 인정된다.
- ⑩ 사정재결·사정판결의 제도가 채택되고 있다.

**(2) 차이점**

	행정심판	행정소송
<b>본질(기능)</b>	행정통제적 기능이 강하다	권리구제적 기능이 강하다
<b>성질</b>	준사법작용, 약식쟁송	사법작용, 정식쟁송
<b>종류</b>	주관적 쟁송 중 항고심판만 인정(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	주관적 쟁송(항고소송·당사자소송)과 객관적 쟁송(민중소송·기관소송)
<b>쟁송대상</b>	위법행위 또는 부당행위	위법행위만
<b>제소기간</b>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b>심리절차</b>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 비공개의 원칙	구술심리, 공개의 원칙
<b>판정기관</b>	행정기관	법원

**14. 개별법상의 행정심판으로 틀린 것은?**

(00년 판세사)

- ① 국가공무원법상의 소청심사청구가 해당한다.
- ②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도 해당한다.
- ③ 이러한 행정심판에 대해 행정심판법은 일반법으로서의 지위에 있다.
- ④ 행정심판제기기간은 개별법규정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⑤ 행정심판재결청은 개별규정내용을 적용한다.

**15. 국세기본법 제61조와 같이 행정심판에 관하여 별도의 특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 )

16. 의무이행심판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김남진·이일세 공저, 전계서, 567면 문8)

- ①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 ② 부작위의 경우에는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으나,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않는다.
- ③ 의무이행심판은 이행쟁송의 성질을 갖는다.
- ④ 현재의 이행쟁송만이 인정되고, 장래의 이행쟁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⑤ 취소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정재결이 인정된다.

17. 사정재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06년 대구 9급>

- ① 심판청구가 이유있으나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 할 때에 행한다.
- ② 취소심판과는 달리 의무이행심판에는 사정재결이 인정이 되지 아니한다.
- ③ 재결청은 사정재결을 할 때에는 재결의 주문에 그 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④ 재결청은 사정재결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8. 사정판결에 대해 틀린 것은?

<06년 광주 9급>

- ① 모든 항고소송에 적용된다.
- ② 손해배상 등의 병합제소가 가능하다.
- ③ 판결문에 처분 등의 위법을 명시한다.
- ④ 비례원칙·이익형량원칙이 적용된다.

19. 甲은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대기오염을 야기하는 공장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대기환경보전법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개선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인 환경부장관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에 대한 갑의 현행 행정쟁송법상의 권리구제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5년 국가직 9급)

- ① 甲은 이 경우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 ②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의 경우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스스로 甲의 신청에 따르는 처분을 하면 된다.
- ③ 甲은 행정소송으로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 소송에서 법원은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데 그쳐야하고, 그 이상으로 행정청이 발급하여야 할 실제적 처분의 내용까지 심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 ④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의 인용판결이 있으면, 환경부



**<조문 : 행정심판법>**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위원회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1995.12.6, 1998.12.2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결청(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개정 1995.12.6>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23.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5년 대구 7급)

-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각 처분청 소속하에 둔다.
- ② 행정심판 청구를 의결하고 이를 재결한다.
- ③ 위원회의 의결은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④ 행정심판위원에게 제척·기피·회피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4. 행정심판의 재결청의 권한이 아닌 것은?**

- ① 집행정지결정권
- ② 재결권
- ③ 사정재결권
- ④ 심판청구사건의 심리권과 의결권
- ⑤ 행정심판위원에 대한 기피결정권

재결청의 권한 및 의무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
<p style="text-align: center;"><b>&lt;권한&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권한인 재결권(재결권, 형식적 권한)</li> <li>* 집행정지결정권과 그 결정의 취소권(집행정지결정권, 형식적 권한)</li> <li>*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권한(행정심판위원 위촉·지명권)</li> <li>* 당사자의 행정심판위원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권(행정심판위원에 대한 기피결정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판청구사건의 심리권과 의결권</li> <li>* 증거조사권</li> <li>* 선정대표자선정권고권</li> <li>* 청구인지위승계허가권</li> <li>* 피청구인경정권</li> <li>* 대리인선임허가권</li> <li>* 심판참가허가권 및 요구권</li> <li>* 청구취지 또는 청구이유변경불허권(청구의 변경 불허권)</li> <li>* 보정명령권 및 직권보정권</li> <li>* 관련청구의 병합심리</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lt;의무&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판청구서가 송부되면 지체없이 그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할 의무(심리회부의무)</li> <li>* 제3자의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처분의 상대방에 통지할 의무(심판청구통지의무)</li> <li>*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할 의무</li> <li>* 재결 후 증거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출자에게 반환할 의무(증거서류 등 반환의무)</li> </ul>	

**25. 고지제도에 관하여 틀린 것은?**

<06년 경기도 9급>

- ① 고지는 행정심판법 외에도 규정되어 있다.
- ② 행정처분시 고지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
- ③ 행정심판전치주의일 경우 고지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고지는 사실행위이다.

**26. 행정심판에 관하여 틀린 것은?**

<06년 경기도 9급>

- ①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② 부작위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심판제기기간에 제한이 없다.
- ③ 서면에 의한 처분에 있어서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실제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고지한 경우에는 그 잘못 고지된 기간 내에 제기하면 된다.
- ④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7. 재결에 관해 틀린 것은?**

<06년 경기도 9급>

- ① 행정심판법은 이행재결의 한 유형으로서 처분재결의 가능성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 ② 각하재결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③ 취소심판청구에 대한 기각재결이 있더라도, 처분청은 당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 ④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기한 재결취소의 소는 부적법각하의 대상이 아니라 기각대상이다.